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이사회 운영규정

2011.11.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적용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정관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 ④ 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8조 제1항 따라 수석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소집일 1주일 전에 소집일시, 장소, 소집사유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소집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이사회에 의결사항을 부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28조 제4

항에 의거 회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의결방법)

- ① 이사는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당해 사안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2. 정관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제·개정을 요하는 사항
 - 가. 직제 규정
 - 나. 보수 규정
 - 다. 이사회 규정
 - 라. 인사 규정
 - 마. 취업 규정
 - 바. 감사 규정
 - 사. 회계 규정
3. 수당 및 실적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금모금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 자문위원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활동비·여비지급 등) ① 이사회에 참여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업무상 출장, 감사 등 위원회 업무에 따른 비용 발생시 위원회에서 지급한다.
- ③ 임원에 대한 활동비는 별표 제4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서면결의) 정관 제38조에 의한 서면결의는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규정제정) 이외의 기타 규정은 회장이 정하되 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

제12조(의사록) 이사회 의사진행 및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사무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부서) 이사회 회의진행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2011.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